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3
----------	------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
-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변경하고, 공공 분야의 용도예외와 민간분야의 사용가능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전체위원의 1/3 이상에서 1/2이상으로 변경(안 제10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0. 10. 21. ~ 11. 1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제6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나. 재난 예방·대비·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라.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 바.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에 의거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차.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융자
- 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 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 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상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 지역에 위치한 시설
-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달성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u>의한</u> 적립금 2. (생략) 3. 그 밖의 <u>잡수입</u> 등	제2조(기금의 조성)-----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u>따른</u> 적립금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u>기타수입</u> 등
제6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영 제74조와 같으며, 세부용도는 별표와 같다</u>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u>별표와 같다.</u>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u>건설도시국장</u> 2. (생략) ②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 ----- ----- 1. 기금운용관 : <u>재난업무 담당국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u>중요</u>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를 <u>설치한다.</u>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과장, 안전방재과장 및 기금운용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협을 갖춘 관계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과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사항으로써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 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2020. 1. 행정안전부)

제6장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1.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